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여신개별거래 약정서

(개별거래용, 기업용)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거래구분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금	원	
여신개시일	20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 일	20 년 월 일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_____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시장금리부여신 : <input type="checkbox"/> CD수익률 + _____ % <input type="checkbox"/> COFIX금리(□단기/□신규/□잔액□신잔액)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금융채금리(□3개월물/□6개월물/□1년물) + _____ % <input type="checkbox"/> USD SOFR (□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 _____ % <input type="checkbox"/> JPY TONA (□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 _____ % <input type="checkbox"/> EURIBOR (□1개월물/□3개월물/□6개월물/□1년물)+ _____ % <input type="checkbox"/> GBP SONIA + _____ % <input type="checkbox"/> CHF SARON + _____ % <input type="checkbox"/> 장외파생상품 연계 외화여신 (아래 금리를 총칭하여 “1일물 무 위험지표금리(복리)”라 합니다) : <input type="checkbox"/> USD 1일물 SOFR (복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JPY 1일물 TONA (복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EUR 1일물 EuroSTR (복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GBP 1일물 SONIA (복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CHF 1일물 SARON (복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수신(수탁)금리연동여신 : 수신(수탁)금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고시금리부여신 : 고시금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공사간접대출 : 정책금융공사간접대출금리 + _____ % <input type="checkbox"/> 외부차입금리 + _____ % (정책자금명: _____, 현재 대출금리 : _____ %)	금리변동주기: _____ 개월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 환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동안 거치하고, ()년 ()월 ()일부터 매()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후 매월 여신개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종여신실행후 거치기간없이 ()년()월()일부터 매()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계 특 약	적립신탁여신에 대하여 관련 월 적립금이 계속하여 4회 이상 연체되는 경우 여신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예금과 여신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2조 이자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지연배상금률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여신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를 적용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 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 지연 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여신이자율의 변동

- ① 「시장금리부 여신」이라 함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하며, 시장기준금리란 원화여신의 경우 여신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일의 CD수익률, 단기COFIX금리, 신규COFIX금리, 잔액COFIX금리, 신잔액COFIX금리, 금융채3개월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리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환여신의 경우에는 USD SOFR, JPY TONA, EURIBOR, GBP SONIA, CHF SARON 중 통화화에 맞추어 고객이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 약정서에 따른 외환여신과 연계하여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이 제1조에서 선택한 1일물 무위험지표금리(복리)가 시장기준금리로 적용됩니다. 각각의 시장금리의 변동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1. CD수익률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CD수익률은 여신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을 적용하고,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나.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그 대체금리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로 합니다.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는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금리로서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므로, CD수익률의 대체금리로 선정하기로 합니다.
 - 다. 은행은 CD수익률의 산출이 중단됨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기로 합니다. 또한, 은행은 홈페이지에 CD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금리 및 선정근거, 적용 시기 등 전환 절차와 일정을 안내하기로 합니다.
 2. USD SOFR, JPY TONA, EURIBOR, GBP SONIA, CHF SARON 및 1일물 무위험지표금리(복리)는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각 통화별로 정한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3. 단기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주 3영업일에 고시하며, 매3개월이 되는 날의 직전 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3개월마다 변경됩니다.
 4. 신규COFIX, 잔액COFIX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15일에 고시하는(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잔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의 경우 매6개월, 잔액기준 또는 신잔액기준의 경우 매1년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직전고시일에 고시된 이자율로 변경됩니다.

5. 금융채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매6개월, 매1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민평평균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금융채 I (은행채) AAA 증가」를 말하고,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1년)마다 변동됩니다

- ② 「수신(수탁)금리 연동여신」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신탁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신탁)상품의 수신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여신이자율이 변동됩니다.
- ③ 「고정금리여신」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여신만료일까지 금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④ 「고시금리부 여신」이란 은행이 주기적(1주일 또는 2주일 등)으로 게시하는 고시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실행건별로는 적용금리가 변동하나 실행 건에 대해서는 건별 만기까지 실행 당시의 고시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여신을 말합니다. 고시금리란 한국은행의 콜금리 또는 기간별(3개월, 6개월, 1년 등)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민평평균 금융채 I (은행채) AAA등급 증가**에 은행의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금리이며, 한국은행 차입성대출의 경우 은행의 한국은행 차입비용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 ⑤ 「정책금융공사간접대출」이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취급하는 대출입니다.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금리는 CD 3개월평균수익률(운전자금) 및 정금채 1년평균수익률(시설자금)에 조달비용을 감안하여 정책금융공사가 3,6,9,12월 매5일에 공사홈페이지 또는 중개금융기관에게 통지하는 금리로서 이자율은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시설자금의 경우 1년마다 변동됩니다.
- ⑥ 「외부차입금리」란 여신실행일에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 변동에 따라 여신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USD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1. USD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USD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SOFR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기간물 SOF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 나. 기간물 SOFR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SOFR (단리)
 - 다. 1일물 SOFR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SOFR”란 뉴욕연방준비은행(또는 SOFR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newyorkfed.org>) 또는 그 밖에 SOFR 산출기관이 SOFR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를 의미합니다.
 - 나. “기간물 SOFR”란 어느 해당 기간에 대하여 CME 그룹이 산출하여 고시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SOFR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SOFR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라. “1일물 SOFR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SOFR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⑧ JPY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1. JPY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JPY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TONA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기간물 TONA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 나. 기간물 TONA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1일물 TONA (단리)
 - 다. 1일물 TONA (단리)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과 고객이 시장 금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리
 - 2. 본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집니다.
 - 가. “TONA”란 일본은행(또는 TONA에 대한 승계 산출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boj.or.jp>) 또는 그 밖에 TONA 산출기관이 TONA의 출처로 지정한 곳에 고시되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정보기관 (Refinitiv, Bloomberg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Tokyo overnight average rate를 의미합니다.
 - 나. “기간물 TONA”란 해당 기간에 관하여 일본은행 (또는 TONA에 대한 승계산출기관)이 관리하고 QUICK Benchmarks Inc. 또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선정한 다른 정보기관(Refinitiv, Bloomberg 등)이 고시하는 TONA에 기초하는 선도 기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 다. “1일물 TONA (단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TONA 금리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라. “1일물 TONA (복리)”란 이자기간 중 매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대하여 그 날로부터 5영업일 전에 산출된 1일물 TONA 금리를 복리로 계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⑨ EUR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1. EUR 외화여신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EUR 장외파생상품 연계 여신을 사용할 경우, “1일물 EuroSTR (복리)”가 기준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 나.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가 일시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계산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여신을 회수하는 경우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담보 소유권자의 변경에 따라 부득이계약인수로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감액·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될 때
 -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
 -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7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외화여신 등 제1조의 여신금액 중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주의 : 채무자 본인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 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2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8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 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3조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조치

- ① 여신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이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작성 명의상의 허위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의 조치 외에 신규여신의 취급중단, 기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과 체결한 약정, 기타 특약사항 또는 자구계획서 등 별도로 제출한 서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신규여신 취급중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진술 및 보장, 기한 전 변제 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약정체결일 및 각 인출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본인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지급은 (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본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본인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본인의 재정상황 또는 본인의 이 약정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본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10. 본인은 각 여신실행일에 본인 및 본인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여신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여신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이 이 약정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본인 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본인이 이 약정 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본인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이익의 상실 등 본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외화여신에 대한 특약사항

- ①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여신이 외화여신인 경우 아래 각 항의 특약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본인에 대하여 진행되는 소송, 압류, 집행,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주권면제의 주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③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은행에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다만, 은행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는 제외함), 본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며, 은행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약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해당 외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상

환 당일의 대고객진환매도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시환율을 적용하여 해당 외화로 환전하여 그 번제에 충당하며, 부족분이 있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은행이 본인에게 그 잔여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의 용도의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③ 용도의 유용 최초 적발시 자금용도의 유용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시 자금용도의 유용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제 3 절 기타 특약사항

본 인 :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 인 : (인)

(수입인지 첨부란)